

프리랜서 계약서

계약건명 :

계약기간 :

주식회사 ○○○(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)는 ○○○(이하 “을” 이라 한다)에게 용역업무를 의뢰 하면서 다음과 같이 `프리랜서 용역계약서`를 체결하고,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.

본 계약은 『갑』 과 『을』 간의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질권설정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1 조 (계약의 목적) 본 계약은 “갑” 이 “을” 에게 용역업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계약의 범위) 을"은 "갑"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작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.

- 1.
- 2.
- 3.

제 3 조 (계약기간 및 계약금액)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 부터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로 한다. ② 총 계약금액은 금○○○○원정으로 한다. ③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%, 작업완료 후 납품과 동시에 잔금 70%를 지급하며, 지급방법은 “을” 이 정한 ○○은행(계좌번호: - - -)로 입금한다.

제 4 조 (납품) “을” 은 작업 진행중 중간완료된 성과물을 ○○○○년 ○월 ○○일 , ○○○○년 ○월 ○○일 , ○○○○년 ○월 ○○일 등 3 회에 걸쳐 중간납품을 하기로 하며 최종 납품은 검토 및 수정 후 완성품으로(CD 롬) 납품키로 한다.

제 5 조 (협조의무) “갑” 은 “을” 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, 작업수행을 위한 “을”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비밀유지) “을” 은 본 작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다.

제 7 조 (품질) 본 계약에 의해 진행 완료된 성과물은 “갑” 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, 만약 품질의 이상으로 활용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금액의 30%만을 지급하기로 한다.

제 8 조 (계약의 해지) ① “갑” 과 “을” 은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 개월 전에 서면으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② “갑” 과 “을” 은 상당한 계약위반이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업무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9 조(해지의 효과) ① 전조 제 1 항의 사유에 의거,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“갑” 은 잔금의 10% 인 금○○○원정을 “을” 에게 지급함으로써 “을” 의 용역수행 대가에 같음한다. ② 전조 제 2 항의 사유에 의거,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귀책사유가 “을” 에게 있을 때에는 기 지급된 계약금 (총 계약금액의 30%) 외 “갑” 은 “을” 에게 나머지 용역수행의 대가를 지급 할 의무가 없다. ③ 전조 제 2 항의 사유에 의거,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귀책사유가 “갑” 에게 있을 때에는 “갑” 은 잔금(총 계약금액의 70%) 중 50%인 금○○○원정을 용역수행의 대가로 “을” 에게 지급한다.

제 10 조(손해배상) “을” 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지연 등 본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손해배상액은 금○○○원으로 정한다.

제 11 조(해석)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.

제 12 조(소송관할)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 통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「 갑 」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-○○

주식회사 ○○○

대표이사 ○○○

「을」

○○○

주민등록번호: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-○○